

[**(주)텍스타트업 사내 복지 및 휴가 규정**]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휴가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연차 휴가)

- 입사 1년 차 미만 직원은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.
- 입사 1년 이상 직원은 연간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.

제3조 (복지 포인트)

- 전 직원에게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한다.
- 복지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되며,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. (이월 불가)

제4조 (경조사 지원)

- 본인 결혼: 유급 휴가 5일 + 화환 + 경조금 50만 원
- 부모 칠순: 경조금 30만 원